공사잔대금등

[의정부지방법원 2023. 9. 21. 2023나204348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원고

【피고, 피항소인】 피고 (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혁)

【제1심판결】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 1. 19. 선고 2022가소3231 판결

【변론종결】2023. 8. 10.

【주문】

]

- 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5,86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5. 27.부터 2023. 9. 2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- 3. 소송 총비용 중 4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- 4.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,5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86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,5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86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,5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86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,5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86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이유]

】1. 당사자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원고는 2021. 12.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(지번 생략)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(이하 '이 사건 1차공사'라 한다)를 공사 대금 55,2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.
- 또한,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(이하 '이 사건 추가공사'라 하고, 이 사건 1차공사와 통칭하여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공사대금 7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.
- 그러나 피고는 55,200,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, 이 사건 1차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5,520,000원과 추가공사대금 7,000,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, 피고는 그 합계액 12,520,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공사 항목금액 (부가가치세 포함)내용12층 페인트 공사2,000,000원 2울타리 페인트 공사800,000원 3목공2,000,000원창고 주차장 상부, 거실 내부 발코니틀 등4샷시 알미늄 공사2,200,000원샷시공사 후 틈이 발생하자 피고 요청으로 알루미늄 앵글로 틈을 마감
 - 나, 피고 주장의 요지
-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로, 원고에게는 3%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므로,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1차공사대금의 3% 상당액인 1,656,000원의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면 된다.

또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,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.

2. 판 단

가.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

- 1) 살피건대,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원고는 '○○인테리어'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, ②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갈음하여 2022. 1. 11.자 및 2022. 1. 28.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, ③ 위 2022. 1. 11.자 견적서에는 '공급합계(VAT 별도): 31,050,000원', 2022. 1. 28.자 견적서에는 '공급합계(VAT 별도): 24,170,000원'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, ④ 원고가 이 사건 1차공사를 완료하고,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5,200,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2. 4. 7.경 '공급대가 55,200,000원'의 현금영수증을 피고에게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공사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.
- 2) 피고가 지급할 부가가치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제1심법원의 구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, 원고가 2021. 7. 1.부터 2022. 6. 24.까지의 기간 중 건설업 업종의 간이과세자로서 30%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①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'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%로 한다'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'부가가치세 별도'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, ②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수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로 보아야 하는 점, ③ 달리 피고가 이 사건 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공사 관련약정 공사대금의 10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,520,000원(= 55,200,000원 × 1/10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나.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
- 1) 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창고 주차장 상부, 거실 내부 발코니를 등의 목공 공사를 피고로부터 추가로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해당 목공 공사관련 추가공사대금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- 2) 나아가 원고는, '2층 페인트 공사', '울타리 페인트 공사' 및 '샷시 알미늄 공사' 관련 추가공사대금의 지급도 구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거나,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[오히려 갑 제3호증(견적서)의 기재에 의하면, 페인트 공사 및 거실, 안방 등의 이중창 창호 공사는 이 사건 1차공사의 견적에 포함되어 있고,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샷시 알미늄 공사는 샷시공사 후 틈이 발생하자 이를 마감하기 위해 수행한 공사라는 것인 바, 위 공사 역시 당초 예정된 창호공사의 마감 공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]. 다.

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,520,000원(= 부가가치세 5,520,000원 + 목공 공사비용 2,000,000원) 및 그 중 제1심법원 인용 금액인 1,656,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. 5. 27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 1심판결 선고일인 2023. 1. 19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,864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5. 27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. 9. 2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,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귀옥(재판장) 이민영 옥제영